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약학 교육과정의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개정된 「약사법」의 시행(2025. 4. 8.)에 맞추어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4호, 2026. 5. 19. 공포, 2026. 11. 20.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과 관련한 하위 법령 규정을 정비하여 평가·인증 제도의 공백없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별표 4] 위반행위 라. 목 및 행정처분 행정처분기준에 “약학” 추가
평가·인증이 의무화된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기존 의료과정운영학교와 동일하게 적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8. ~ 10. 19.)

3) 행정규제 : 심사예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대통령령 제00000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또는 약학 전공 학과등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해당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또는 약학 전공 학과등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	--	--

부 칙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4] 1. (생략) 2. 개별기준			[별표 4]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가~다. (생략)	(생략)	(생략)	가~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법 제11조의2제2항	해당 의	해당 의	라. -----	--- 의학	--- 의
단서 및 「고등교육	학·치의	학·치의	-----	· 치의	학·치
기관의 평가·인증	학·한의	학·한의	-----	학·한	의학·
등에 관한 규정」 제	학 또는	학 또는	-----	의학·	한의학
2조의2(대통령령 제	간호학	간호학	----- (대통령령 제	간호학	· 간호
27228호 고등교육	전공 학	전공 학	00000호 -----	또는 약	학 또는
기관의 평가·인증	과등 또	과등 또	-----	학 ----	약학 ----
등에 관한 규정 일부	는 전문	는 전문	-----	-----	-----
개정령 부칙 제2조	대학원	대학원	-----	-----	-----
를 포함한다)를 위	입학정원	폐지	-----)	-----	-----
반하여 평가·인증	의 100		-----	-----	-----
을 신청하지 않거나	퍼센트		-----	-----	-----
평가·인증을 받지	범위에서		-----	-----	-----
않은 경우	모집정지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대학정책관	
연 락 처	(044) 203 - 6911, 6835, 6838